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14
----------	---------

제출연월일	2005. 3. 17
제 출 자	사 천 시 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1회용품 신고포상금 1인당 지급제한 강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하향조정, 신고포상금 현물 지급 허용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 조정함
- 나.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가능 하도록 함
- 다.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 강화
  - 연 100만원 ⇒ 연 50만원 (지급한도액 산정은 전국 기준)

###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 라. 기 타

1) 신· 구 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05. 1. 26 ~ 2005. 2. 28)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제1조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을 각각“「식품위생법」”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  
같은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간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중 “행정절차법”을 각각“「행정절차법」”  
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서식중 “사천시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  
조례”를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서식중 “비송사건절차법”  
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각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 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2
2.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나.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다.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3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4.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2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2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2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에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8조(-----) ① &lt;삭제&gt;</p> <p>② ~ ③(현행과 같음)</p>
<p>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생략)</p> <p>1. (생략)</p> <p>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297mm)또는 1,000cm<sup>2</sup>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p>	<p>제9조(-----)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lt;삭제&gt;</p>
<p>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14조(-----)</p> <p>①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지급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생략)</p> <p>1. ~ 2. (생략)</p> <p>3. 신고자 1인당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lt;신설&gt;</p> <p>4. ~ 5. (생략)</p>	<p>제15조(-----)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이 경우 연간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한다.</p> <p>4. ~ 5. (현행과 같음)</p>

## 현 행(개정전)

【 별표1 】

#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3항)	300	300	300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b>20</b>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b>10</b>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b>7</b>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b>3</b>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b>20</b>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b>10</b>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b>7</b>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b>30</b>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b>30</b>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b>20</b>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b>10</b>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b>7</b>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b>20</b>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b>10</b>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b>7</b>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b>3</b>

과 태 료				포상금액 (만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4.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법 제14조)	200	300	300	
5.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6.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1조)	300	300	300	
7.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50	100	300	

- 주) 1.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범위에서 산입한다.  
 2.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법인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 개 정 안

【 별표1 】

##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부 과 대 상	과 태 료			포상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 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2
2.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나.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다.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3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4.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2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2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2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

# 관 계 법 령 발 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부과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주무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